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날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을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 (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케어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담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은 장기요양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라. 계약자 (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및 카드결제로 납부 할 수 있다.

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 - 요양시설, 정원 [41]명

[첨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2025년/30일 기준)

구 분		월 이 용 료 내 역		비 고
월이용 보험료	1등급	90,450원x 30일	= 2,713,500	
	2등급	83,910원x 30일	= 2,517,300	
	3,4,5등급	79,240원x 30일	= 2,377,200	
보험료 (본인 부담금)	1등급	90,450원x 30일	x 20% = 542,700	자부담20%
	2등급	83,910원x 30일	x 20% = 503,460	
	3,4,5등급	79,240원x 30일	x 20% = 475,440	
보험료 (본인 부담금)	경감 1등급	90,450원x 30일	x 12% = 325,620	자부담12%
	경감 2등급	83,910원x 30일	x 12% = 302,076	
	경감 3,4,5등급	79,240원x 30일	x 12% = 285,264	
보험료 (본인 부담금)	경감 1등급	90,450원x 30일	x 8% = 217,080	자부담8%
	경감 2등급	83,910원x 30일	x 8% = 201,384	
	경감 3,4,5등급	79,240원x 30일	x 8% = 190,176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면 제		

[첨부 2]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30일 기준)

비급여항목	금액(원) 30일기준	내용	산출근거
식재료비	225,000	아침/점심/저녁 2,500*3	하루/ 7,500*30일
간식비	45,000	오전 1회 / 오후 1회 제공 1,500	하루/ 1,500*30일

사. 기타 비용 부담액 :

- ①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어르신으로 수급자가 원할 경우, 당뇨병에 대한 당뇨체크 시 사용량에 따라 청구 할 수 있음.
- ③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④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 ⑤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⑥ 이미용 시 일부 실비 비용 청구 할 수 있음.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 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표준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변경을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관리 : 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물리치료), 간호서비스, 의약품 관리, 건강검진

나. 급식관리 : 급식 서비스, 간식 서비스, 영양관리

다. 여가활동지원 : 어르신들의 고독,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라. 생활지도지원 : 수급자 보호 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요양 활동 서비스, 일상 생활 동작훈련

마. 응급의료 후송관리 : 협력 병원과 빠른 연계 진료

2. 비용 부담

-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보호자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협의를 거쳐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 또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불성실한 태도나 응급발생 상황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계약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행하는 건강검진 수검비용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라. 그 외 서비스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